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

I. 목적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 거래 환경 조성

II. 적용 근거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조(채널평가와 채널구성) ③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PP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P는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④ PP가 피평가 채널에 대해 해당 평가년도에 허위 또는 잘못된 평가 자료를 제출했음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해서 평가년도 다음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유료방송사가 해당 평가년도 평가 기준 공개 시 미리 불이익 부과 절차와 기준을 공개한 경우에만 유효함

⑤ PP가 피평가 채널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불이익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오류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 발생시,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PP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PP는 필요한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III. 불이익 부과절차

-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PP 평가를 위한 자료에 PP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잘못된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채널 평가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을 적용함

- ② 유료방송사업자는 PP의 평가 자료 제출 마감 일자를 설정하고, PP는 제출 마감 일자 이내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 일자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모두 0점 처리함.

다만, 자연재해 같은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PP는 공문으로 제출 마감 일자의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결정함

-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제출 일자 이내에 평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PP가 해당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설정된 제출 마감 일자에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음

* 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 마지막 제출본을 평가 자료로 인정

- ④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마감 일자 이후 PP가 제출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대 1회(각 영업일 기준 +3일) 추가 수정 기회를 부여함. 추가 수정 이후에도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IV.불이익 부과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함. 단, 추가 수정 기한 내 미제출 시 기 제출한 RFP를 유료방송사가 전면 재검토하여, 발견된 모든 오류사항은 허위 기재로 간주함.

- ⑤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이익 부과 시, 해당 내용 및 불이익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PP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함

- ⑥ 오류 내용 및 불이익 기준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PP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유료방송사에 소명하고, 유료방송사업자는 PP의 소명 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PP에게 그 결과를 회신함

Ⅳ. 불이익 부과기준

- ① (평가 결과 확정 통보 전) 평가 자료 추가 수정 기한 이후 제출 자료에서 발견된 오류의 판단기준에 따라, 오류 확인 시점 해당연도 평가에 4조 2, 3항과 같이 불이익을 부과함

(평가 결과 확정 통보 후) 채널 재계약 보류 대상 지정 등 모든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제출 자료에서 발견된 오류의 판단기준에 따라, 오류 확인 시점 다음 연도 평가에 4조 2, 3항과 같이 불이익을 부과함

- ② 추가 발견된 오류가 단순실수로 판명될 경우

- [편성, 콘텐츠투자비 항목] 발견되는 오류 1건당 채널평가 총점에서 1점씩 감점함 (최대 5점 감점)
- [제작역량, 운영능력 항목] 발견되는 오류 1건당 채널평가 총점에서 1점씩 감점 처리함 (최대 2점 감점)

※ 단순실수 인정 기준 : 평가 등급에 불리하게 작성된 오류 등

- ③ 발견된 오류가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판명될 경우

- [편성, 콘텐츠투자비 항목] 해당 항목 0점 처리함
: 편성 항목 중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허위 기재 시, 해당 채널의 채널 평가 총점에서 건당(프로그램 편성 횟수) -1점씩(최대 -5점) 감점할 수 있음 (*자세한 요건은 별첨)
- [제작역량, 운영능력 항목] 해당 항목 0점 처리함 (내용심의처분·편성비율 위반은 -2점 처리)

※ 허위 기재 기준 :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 가능한 허위 오류 (ex. ① 홈쇼핑, Non-tv 서비스 등 통합 법인임에도 투자비를 구분·제외하지 않고 제출하는 사례 ② 평가상 감점으로 작용하는 처분/사고/체납 등의 사항 중 PP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누락하고 제출하는 사례 등)

부칙 <2022.7.5. 제정>

- 해당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은 2022년 채널 평가부터 적용

부칙 <2023.6.29 개정>

- 해당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은 2023년 채널 평가부터 적용

부칙 <2024.5.20 개정>

- 해당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은 2024년 채널 평가부터 적용

부칙 <2025.3.6. 개정>

- 해당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은 2025년 채널 평가부터 적용

부칙 <2026.3.11. 개정>

- 해당 「채널 평가 자료 오제출에 따른 불이익 부과 절차 및 기준안」은 2026년 채널 평가부터 적용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 기준

I. 목적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매년 진행하는 PP채널평가에서, 방송 콘텐츠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표준안의 편성항목 평가 점수(F/W, 2년 이내 제작, 순환편성) 고득점을 받는 콘텐츠가 매년 증가
- 콘텐츠 사업자는 시의성, 창의성 등 정성적 가치에 근거해 “방송”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량적 평가 기준을 남용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편법 예방 필요성 증가
-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구매하는 콘텐츠사가 정량평가의 한계로 인한 투자 의지 상실, 유료방송 콘텐츠 품질 하락 및 생태계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마련하고, 요건 판단 기준 및 불이익 부과에 대한 절차를 규정

II. 기본 요건

- 사회 통념상 ‘방송’ 콘텐츠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되는 콘텐츠 중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①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인력이 극도로 부족
 - ① 수신료를 부담하는 유료방송 시청자가 해당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극도로 적음

예시) 기존 방송 단순 짜깁기 + 극히 일부의 장면을 추가하여 신규 프로그램(F/W O, 2년 이내 O, 순환편성 X)으로 주장하는 경우, 정지화면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긴 시간 지속되는 프로그램, 장면변화 없이 같은 장소를 장시간 촬영한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 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장면을 수회 반복하는 프로그램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집중 편성 시간대(새벽 등), 연간 총 편성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정임

II. 판단 및 불이익 부과 절차

- 유료방송사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사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소명을 요청받은 콘텐츠사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소명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소명 포기로 간주하고 허위기재로 처리함
- 유료방송사는 콘텐츠사의 소명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콘텐츠사 채널이 런칭되어 있는 유료방송사의 2/3* 이상이 합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결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FW ×, 2년 이내 ×, 순환편성 간주), 해당 채널의 채널평가 총점에서 건당(프로그램 편성 횟수) -1점씩(최대 -5점) 감점할 수 있음

* 3개 미만의 유료방송사에 런칭된 채널의 경우, 만장일치 의결 필요